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2년 12월~2023년 1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I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인공방광 장애심사기준 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 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신설〉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 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 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

### 〈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 신설 〉

-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 〈 사례 〉

인천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6월 방광암 진단을 받고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인공방광 조성술을 시행하고 추가 항암치료 없이 외래로 경과 관찰 중이다.

2022년 1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장애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인공방광술” 기준이 신설되어 2023년 1월부터는 장애연금(장애 4급 일시금 약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 완화 〉

-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 〈 관절유합술 조기완치 인정 〉

-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 사례 〉

충청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2년 1월에 건물 공사 중 추락하여 전체 여러 부위 골절상을 입게 되어 치료 중 4월 좌측 발목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다른 부위도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청구를 문의하였더니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부상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관절 유합술의 경우 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완치(증상고정) 인정됨으로써 2023년 1월부터는 청구 시 장애연금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 신장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

-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주 2회 이상’ 문구 삭제)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 사례 1 〉

강원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2021년 7월에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21년 9월부터 투석요법(주 1회) 치료를 하게 되어 2022년 4월 장애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주 2회 투석요법 치료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연금 3급을 받고 있었다.

김씨의 경우 이번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개정으로 청구 시 장애연금 2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사례 2 〉

서울에 거주하는 이씨는 만성신부전 진단받고 2021년 3월부터 투석요법을 받고 있어 장애연금을 청구하였다. 주 2회 투석을 확인할 수 있는 투석기록지를 모두 구비하지 못하여 연금 심사 중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으나 제출기한이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씨의 경우 이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장애연금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하였다.

\* 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

■ 보건복지부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 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 「법령 및 사규(제규정) 정보」→ ‘법령 개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 현행   | 개정   | 개정이유                        |
|-------------|--------------|--|--|-----------------------------|
| 귀의 장애       | 청력검사 주기      | 7일간의 간격  | 2~7일간의 간격                                    | 고객 편의성 증대<br>장애인복지법과 기준 일원화 |
| 팔/다리의 장애    | 장애등급 4급 인정범위 | 한 팔/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              | 한 팔/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 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 | 장애 인정기준 완화하여 수급권 확대         |
|             |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 없음   | 인정기준 신설                                      | 기준 신설로 수급권 확대               |
|             | 관절유합술의 조기 완치 | 없음   | 관절유합술의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               | 조기완치 기준 신설로 수급 시기 단축        |
| 척추의 장애      | 척추질환 인정범위    | 강직성 척추염  | 강직성 척추질환                                     | 척추질환 인정범위 확대하여 수급권 확대       |
|             | 완전유합 인정범위    | 전종인대골화 미포함   | 전종인대골화 포함                                    |                             |
|             | 변형장애         | 반드시 누운 자세로 방사선 촬영                                  | 척추를 최대한 바르게 편 자세로 방사선 촬영                     | 심사기준 정비                     |
| 신장의 장애      | 투석요법 판정기준    | 주 2회 이상 지속적 투석치료를 받는 자                             |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자                             | 장애 인정기준 완화하여 수급권 확대         |
| 혈액·조혈기의 장애  | 악성림프종 심사기준   | 조혈기관을 침범하지 아니한 악성림프종은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심사 기준에 준하여 심사함 | 악성림프종은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음   |                             |
|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 인공방광         | 없음   | 장애등급 4급 신설                                   | 기준 신설로 수급권 확대               |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20097. 국민연금정책과 2022.12.21.

II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안심병원(제10호,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 신규 지정,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실시 -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목)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간,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다.

○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 폭력, 망상 등의 증상)이 심한 환자

\*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20) 4개소 → ('21) 7개소 → ('22) 10개소

○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1.1월~'22.12월)」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3년, ~'25년)하기로 결정하였다.

○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 치매안심병원 대상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내 1일당 45천원을 차등하여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

○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당초 4개소, '22.7월 이후 3개소 추가)에서 참여 환자(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

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5천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되었다.

\* <붙임2> 시범사업 개선방안 참고

-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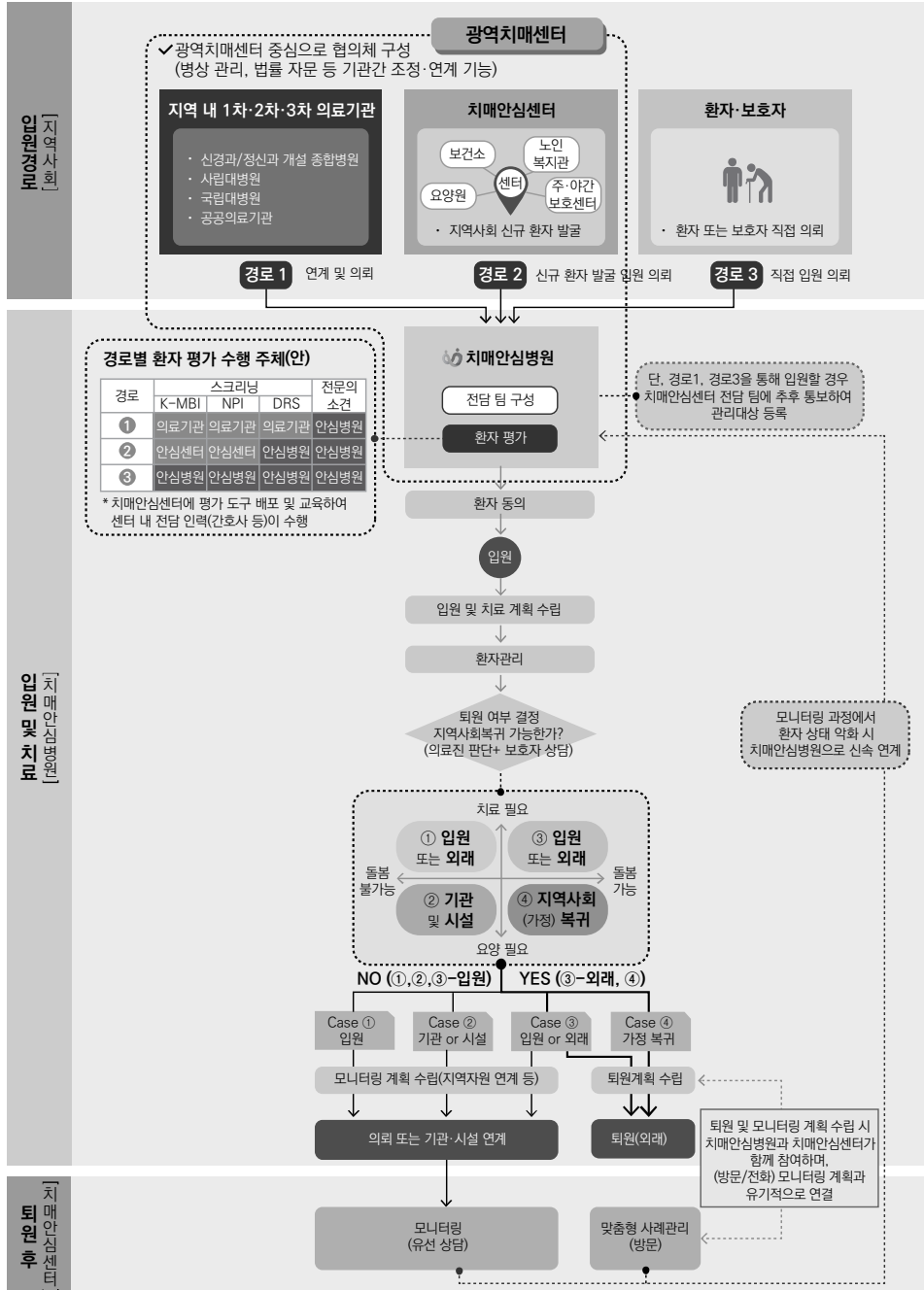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제1항 관련 별표1

-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

\*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에 해당되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각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시범사업 운영체계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109. 치매정책과 2022.12.22.



Ⅲ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②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

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149. 보육사업기획과 2023.01.03.

IV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 지원대상 2000명 확대(2.8만 명→3만 명)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 자리를 신규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2022년 2만 7546명 대비 2000명을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다.

-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이며, 전일제(주40시간) 또는 시간제(주20시간)로 1만 1515명을 지원한다.
- 복지 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문화예술활동 등 총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22년기준 3,676개소)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만 5794명을 지원한다.

\* "Disability & Disability 케어"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동료상담, 일상생활 어려움(식사, 차량승하차, 청소 등) 등을 지원하는 업무

-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일자리 유형을 신규로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원한다.

- 2023년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화 직무와 4차 산업분야(데이터라벨링\*\*, 스마트팜\*\*\* 등) 등에 대한 특화 직무를 개발하여 2024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고용률) 정신장애인 10.9%, 전체장애인 34.6%(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등장하는 모든 것에 라벨을 달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

\*\*\* 농산물의 생산단계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시스템

-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순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160명을 지원하고,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077명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유형 개발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158. 장애인자립기반과 2023.01.08.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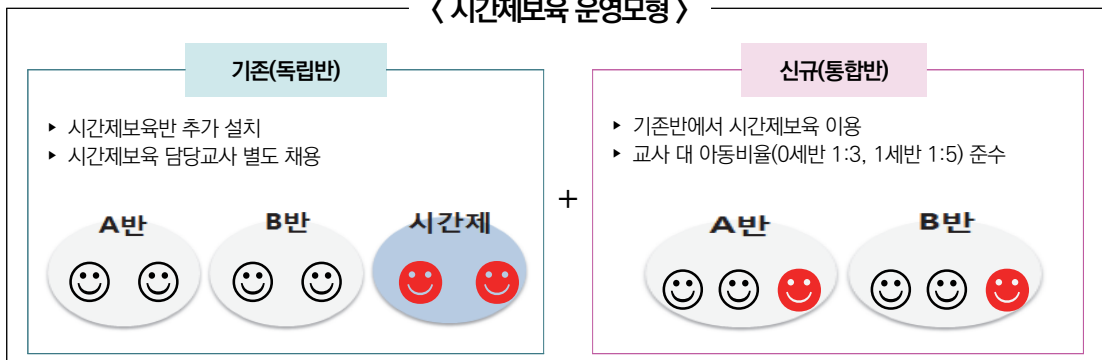
###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에서 제공기관 찾기·예약·결제가 편해집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은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을 새롭게 개편하여 1월 11일(수)부터 앱(app)을 통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 및 예약이 쉬워지고, 결제가 앱(app)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의 양육자가 병원을 이용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단시간 일을 하는 등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이 전국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이용 가능하며, 2022.12월 기준 전국 955개 반(독립반 823개 반, 통합반 132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반 외에도,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비어 있는 자리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하는 통합반 모형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합반은 독립반에 비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더 신속히 확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정규보육반 : 연령에 따라 0세반(3명), 1세반(5명)으로 운영

#### < 시간제보육 운영모형 >



■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을 통해 개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개편내용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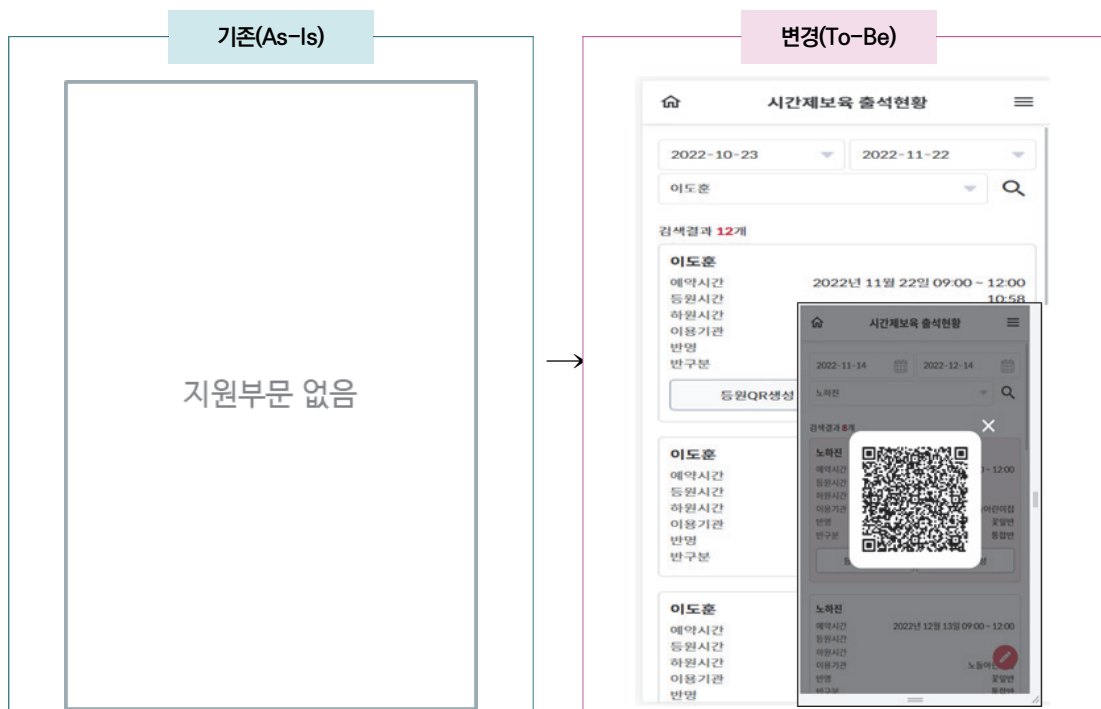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기능 강화, ▲시간제보육 모바일 출결 및 결제 기능 도입, ▲시간제보육 통합반 모바일 예약 기능 도입, ▲로그인 방식(금융인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추가,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메인화면을 개편하여 사용자의 가독성·접근성 향상

- 첫째, 가까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찾으려면 시·도별 모든 기관이 나열되어 가까운 기관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변의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이 지도에 표시되어 한 눈에 원하는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 둘째, 모바일 앱(app)을 활용한 시간제보육 출석현황 관리 및 보육료 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 기존에는 시간제보육 선생님이 직접 수기로 출석현황을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app)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시간제보육 등·하원 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
  - 또한, 그간에는 현장 결제만 가능하여 등하원시 아이를 데리고 예약 건마다 결제해야 해서 보육교사와 이용 부모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이용한 부모가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며, 현장 결제 시 여러 건을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
  - 모바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카드를 앱(app)에 등록한 후 이용이 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1,000원이다. 월 80시간까지 정부지원이 되며, 월 8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 셋째,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모바일로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 독립반은 모바일로 예약이 가능했으나, 현재 시범사업 중인 통합반의 경우 이용자들이 아이사랑 누리집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컸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을 통해 예약하고 예약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넷째,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이용 시 로그인 방식이 다양하게 추가된다.
    - 기존에는 아이디(ID)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했으나, 이제 생체인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를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 다섯째,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메인화면을 개편하여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 위주로 배치하여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필요한 기능 위주로 메뉴를 정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편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을 갱신(업데이트)해야 하며, 갱신(업데이트)은 1월 11일(수)부터 가능하다.
-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메뉴 - 정보공유 - 이용문의 - 시스템 이용문의”를 통해 접수하거나, 아이사랑 헬프 데스크(help desk) “1566-3232 → 단축번호 1번(보육)”으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개편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검색, 예약, 이용, 결제 기능까지 모두 개선되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0164. 보육사업기획과 2023.01.10.